

제 호

[]사용중지 []작업중지 명령서

사업장명:

소재지:

전화번호:
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53조 []제1항 []사용중지
[]제3항 []작업중지 에 따라 다음 대상에 를 명하니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

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사용(또는 작업)을 재개하기 바라며,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

[]제169조 에 따라 []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
[]제168조 []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

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대상	
안전·보건기준 위반내용	

※ 이 명령은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·위험이 있어 긴급히 시행하는 처분으로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생략합니다. 이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(지)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(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함),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라 지방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지방고용노동청(지청)장

직인